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4. 22.
행정소방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9년 4월 8일
충청북도지사

2. 회 부 일 자 : 2009년 4월 9일

3. 상 정 및 의 결 일 자

제2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2009. 4. 20)
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토론, 심사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신동인)

1. 제안이유

우리도 유망 작목인 수박의 브랜드화를 위한 전담연구 기능을 집중
수행토록 하고, 농업 경쟁력 확보 및 농업 명품도 조기 달성 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시험장 중 '채소연구소'의 명칭을 '수박연구소'
로 변경

Ⅲ. 검토보고 요지

(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

가. 명칭변경의 필요성

이 개정조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역농업연구기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농업기술원의 특화작목시험장 중 음성군에 소재하고 있는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역농업연구기관을 지역성장 유망작목 중심의 1연구기관 1작목 특성화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채소연구소'의 명칭변경은 필요하다고 보았음.

나. 연구소 명칭을 '수박연구소'로 하는데 대해

2008년 우리도의 수박재배 면적은 2,665ha로 전국 재배면적 20,553ha의 13%, 생산액은 1,264억원으로 전국 8,670억원의 14.6%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음성 맹동의 다올찬수박, 진천 덕산수박, 단양 어상천수박, 영동 양산의 솔향기수박은 현재에도 수박브랜드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

이와 같이 수박은 재배농가와 면적이 많고 다른 작목에 비해 경쟁력이 있으므로 우리도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았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V. 토론 요지 : “생 략 ”

VI. 심사 결과 : 원안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IX.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한다.

별표 1 중 명칭란의 “채소연구소”를 “수박연구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채소연구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수박연구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 시험장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u>채소연구소</u>, 잠사시험장을 둔다.</p> <p>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25조(특화작목시험장) ① 기술원에 도 특화작목의 품종개량, 재배방법 개선, 생리생태, 저장 및 가공이용 등 과 기타 소득작물에 관한 시험 연 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화작목시 험장을 둔다.</p> <p>② 제1항에 따른 특화작목시험장으로 포도연구소, 마늘연구소, <u>수박연구소</u>, 잠사시험장을 둔다.</p> <p>③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 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